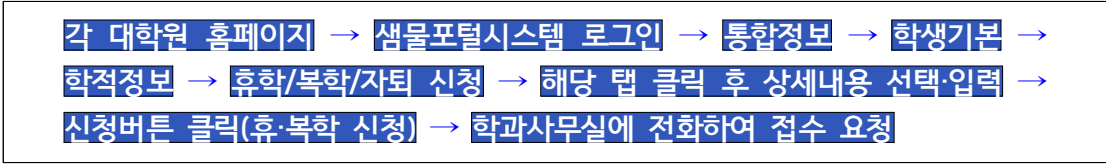


202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·복학 신청 안내

1. 대상: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
2. 기간: 2025년 7월29일(화) ~ 8월 2일(토) ※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외 신청 가능
3. 신청방법
 - 가.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함.
 - 나. 신청절차 및 방법



4. 휴학유형별 증빙자료(파일로 첨부)

- 가. 일반휴학(2년): 제출서류 없음
- 나. 질병휴학: 1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
(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함.)
- 다. 군휴학: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
- 라. 모성보호휴학(2년):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(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마. 직장휴학(1년): 근무지 변경, 업무 전환, 연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 등)
- 바. 창업휴학(1년):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5. 특기사항

- 가. 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,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통산 2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기간 내 휴학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- 나. 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 외 휴학은 해당 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.
- 다.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며,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라. 복학 희망자는 복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수강 신청할 수 있음(복학신청 후 학과사무실 연락).
- 마. 군휴학 후 복학하는 사람은 전역(예정)증명서 또는 소집연기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.
- 바. 신입생은 입학일 이후 휴학 신청이 가능함.
- 사. 학·석사연계과정 및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병역의무, 질병사유 및 모성보호휴학 이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이 사증 발급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입국이 지체되는 경우는 예외함.
- 아. 외국인은 휴·복학 희망 시 대학원교학팀 담당자(한예리, 02-2287-7015)와 사전 상담 필요함.

2025. 7.

대 학 원 장
특 수 대 학 원 장